

코로나19와 이주사회를 위한 입법^{*,**} Legislation for Immigrant Society under the COIVD-19 Situation

박 효 민^{***}

Park, Hyomin

김 현 정^{****}

Kim, Hounjoung

최 윤 철^{*****}

Choi, Yooncheol

목 차

- | | |
|-------------------------|-----------------------|
| I. 서론: 사회재난으로서 코로나 | IV. 팬데믹과 이주민 관련입법과 정책 |
| II. 감염병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시선 | V. 결론: 공정한 회복을 위한 입법 |
| III. 팬데믹과 이주민의 취약성 | |

<https://doi.org/10.35148/ilsilr.2021..49.29>

투고일: 2021. 6. 30. / 심사회의일: 2021. 8. 9. / 게재확정일: 2021. 8. 27.

* 이 논문은 2021년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한국입법정책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재난과 입법” 학술대회에서 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주민 관련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특별세션을 마련해 주신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한국입법정책학회, 그리고 논문의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강현호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논문의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3080949).

*** 제1저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조교수, 사회학박사

Lead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Sociology, University of Seoul

**** 공동저자: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전임연구원, 법학박사

Co-Author: Ph.D. in Law, Research Fellow, Migration and Social-Integration Research Center, Konkuk University

***** 교신저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School of Law, Konkuk University

유례없는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전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주민은 많은 사회에서 약자이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위험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인간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 직업, 교육의 측면에 이주민이 처한 현실은 매우 어렵다는 점이 여러 실증적 자료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불균등한 재난의 영향에 주목하고, 이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을 살펴본다. 많은 국가에서 이주민은 코로나19 감염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노동 이주를 위한 입·출국과 실업률 면에서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이주민 자녀들의 인터넷 접근성이 비교적 떨어짐에 따라 비대면 교육 과정에서 교육기회의 불균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한국의 입법체계는 국적을 가진 국민을 중심으로 하므로 재난상황에서 이주민에 대한 배려와 포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코로나19 이후 여러 시행착오와 구제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어느 정도 정책적 대처가 있었으나,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의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외국인의 상황에 비추어 공정한 회복(just recovery)을 위한 외국인 관련 입법과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코로나19, 이주사회, 이주민, 공정한 회복, 팬데믹, 이주입법, 기본권

I. 서론: 사회재난으로서 코로나

누구도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감염병의 대유행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사람들이 감염되고, 고통받고, 심지어 사망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번 팬데믹은 유례없는 전세계적 재난상황이다. 이러한 감염병의 대유행은 자연적 재난일까, 사회적 재난일까? 정부의 “국민재난안전포털”의 분류에 따르면 감염병의 대유행과 그에 따른 의료기반체계의 마비는 사회재난으로 분류된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법적으로 구분하는 주된 이유는 책임소재에 따른 지원 및 보상에 관한 내용 때문이다. 자연재난은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재난과 달리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광범위하게 재난에 대한 대비와 대응 복구에 대한 비용을 제공한다. 반면 사회재난은 발생과 대응, 피해의 경로에서 인간의 활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책임소재와 이에 따른 보상의 정도에 차이를 보이게 된다. 다시 말하면 감염병이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는 경우 감염병의 바이러스나 세균의 발생 원인과는 별개로 전파와 치료 단계에서 사회적 요인이 강하게 개입되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방역과 회복에 대한 책임을 진다.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재난의 발생과 확산, 그리고 그러한 재난에 대한 대응과 복구의 과정에 인간의 영향력이 미치는 정도가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모든 재난은 사회적 재난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자연적으로 촉발된 재난들이 사회적 요인을 통해 피해의 범위나 정도가 달라진 예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1995년 8월, 미국의 시카고에 닥쳤던 폭염으로 인해 불과 며칠 만에 739명의 열상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폭염 자체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자연적 재난이었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자연적 재해의 피해자가 대부분, 흑인 저소득층이 사는 우범지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폭염은 지체장애를 돌봐줄 사회적 연결망이 없거나, 에어컨 시설이 없는 거주민들, 창문을 열거나 바깥 활동을 할 수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¹⁾ 마찬가지로 지난 2005년 미국 남부를 강타하며 2,576명의 사망, 실종자를 낸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해 시기에도 홍수로 인해 제방이 무너져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피해자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제방 보강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흑인 거주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자연재해인 허리케인의 피해자는 절대다수가 저소득층 혹은 유색인종이었다. 이와 같은 예는 재난의 영향력이 사회적 집단에게 평등하지 않고, 회복가능성 역시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최근 대두되는 재난취약성 이론에 따르면 재난에 대한 계층별 취약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재난의 사회적 성격 때문에 재난에 대응하는 정책도 재난의 피해에 취약성(vulnerability)이 높은 계층과 재난이 지나간 후 회복력(resilience)이 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오고 있다.²⁾ 이번 코로나19 역시 바이러스 자체는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자연재해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바이러스가 초래하는 위협의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한 사회적 재난이다. 실제로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한 감염병의 피해는 역사적으로 계층에 따라 구분되어 나타났으며,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시스템에 의해 강화 또는 약화되기도 하였다. 이때 취약계층은 다른 계층보다 더 많은 위협에 노출되며,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재난으로부터의 회복에서도 더딘 회복을 보인다.

이 논문은 역사적으로 어느 때보다 이주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지금, 많은 사회에서 그들이 인종, 국적, 문화에 의한 차별로 인해,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로 인해 재난상황에서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1) 이 재난에 대한 연구로는 Eric Klinenberg, *홍경락 옮김, 폭염사회: 폭염은 사회를 어떻게 바꿨나*, 글항아리, 2018을 참조.

2) 양기근, “재난 취약성 극복과 복원력 향상 방안-재난 취약성과 복원력의 개념적 통합을 중심으로”, *Crisisonomy* Vol.12, No.9,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6, 144-145쪽.

체계는 동등하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이미 사회적 약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들의 사회적 위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경기지역 조사의 경우 65.7%가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으며, 27.8%는 장보기나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물론 이와 같은 피해는 이주민이라서 특별히 겪는 피해라기보다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등하게 겪고 있는 어려움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8.2%의 응답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에서의 차별과 혐오가 생겨났다고 응답하였으며, 13.9%는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차별을 겪었고, 9.5%는 기숙사 밖의 출입을 제지당하는 등의 인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대중시설(31.5%)이나 직장(18.9%)에서 시선을 회피하거나 과격한 혐오발언에 노출되고, 코로나19의 원인으로 지목하거나 감염 우려를 표현하는 등 직접적인 차별을 경험한 경우도 많았다. 또한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외국인을 추방해야 한다는 등의 불특정 다수에 의한 차별과 혐오를 경험했다는 경우도 5%가량 되었으며, 언론보도에 의한 차별을 느낀 사람도 3.3%나 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 차별과 혐오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

따라서 한 사회의 취약집단으로서 이주민이 감염병 확산에 어떠한 피해에 불균등하게 노출되어 있는지, 혹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거시적이고, 국제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보건의료 측면, 경제적 측면, 문화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실증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주민이 겪는 취약성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이주민의 취약성이 입법 과정에 가지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감염병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시선

이주민이 감염병으로 인해 선주민보다 사회적 피해를 입는 상황들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발견이 된다. 이 장에서는 1918년 전세계적인 독감 대유행, 2010년도 한국에서의 가축전염병 발생, 그리고 한국에서 코로나19 상황의 예를 살펴보겠다.

3) 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 모니터링 결과 보고, 국가인권위원회, 2020, 11쪽.

1. 1918년 독감 대유행

지난 100여 년간 가장 큰 전 세계적 감염병 확산 중 하나는 1918년 독감의 대유행이었다. 이 감염병은 명명의 단계부터 차별적 요소를 지니고 있었는데 흔히 “스페인 독감”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병은 이미 제1차대전을 겪고 있는 유럽 전역에 퍼져있었으며, 본격적인 확산이 시작된 곳은 미국의 시카고였다. 이 독감이 스페인 독감으로 알려진 이유는, 제1차대전 전쟁 중인 각국 정부는 적군이 자신들의 전력 누수를 알아차릴 것을 우려하여 자국에서 독감 확산을 보도하는 언론을 검열했는데, 아이러니하게 가장 언론 검열이 약했던 스페인 기자들이 이 독감에 대해 자세히 다루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독감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스페인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는 이후 “스페인 독감”으로 잘못 명명되어 지금까지 20세기 가장 강력했던 독감으로 잘못 알려져 왔다. 이로 인해 스페인은 오랫동안 “스페인 독감”과 연관된 오명을 가지게 되었으며, 실제로 스페인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최근 들어 WHO에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을 우려해 지역 이름을 감염병 이름에 넣지 않도록 권고하기 시작했으나 “스페인 독감” 이후에도 홍콩 독감, 멕시코 독감, 우한폐렴 등 지역 명칭을 쓰는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발생지역에 대한 낙인은 이와 연결된 인구집단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주민들 집단에 대한 낙인으로 연결된다. 이주민이 감염병의 원천이라는 낙인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1830년대에 미국에서는 가난한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콜레라의 소지자로 낙인된 적이 있으며,⁴⁾ 19세기 말에 결핵은 “유대인 질병” 또는 “재단사의 질병”이라는 오명을 통해 인종, 혹은 특정 직업집단에 대한 차별 기제로 사용되었다.⁵⁾ 또한 1900년대 초반 하와이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한 흑사병 발병으로 인해 인종차별적 언론보도와 인권침해가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병원균을 없앤다는 명목 하에 고의로 차이나타운을 불태우는 일까지 발생하였다.⁶⁾

이는 1918년 독감 대유행 때도 예외는 아니었다. 공교롭게도 1900년대 초반은 1910년부터 1915년을 중심으로 미국 역사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들이 외국에서 입국한 시기였다. 1900년부터 1915년 사이에 미국에는 약 1,500만명의 외국인이 이주를 하였는데, 이

4) 김서형, “19세기의 유행성 콜레라와 미국사회 개혁운동”, *의사학* 제24권 제3호, 대한의사학회, 2015, 784쪽.

5) Alan M. Kraut, “Immigration, Ethnicity, and the Pandemic”, *Public Health Reports Vol.125 Issue 3*, SAGE, 2010, p.125.

6) Dennis Zhang, “Sinophobic Epidemics in America: Historical Discontinuity in Disease-related Yellow Peril Imaginaries of the Past and Present”. *Journal of Medical Humanities* 42, Springer, 2021, pp.65-68.

수는 이전 40년 동안 입국한 이주민보다도 많은 수였으며, 이로 인해 1910년 뉴욕시 인구의 3/4은 이주 1세대 혹은 2세대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들은 주로 이탈리아, 폴란드, 러시아 등 비영어권 국가 출신이 많았다.

이와 같은 이주사회의 변화는 1918년 독감 대유행의 원인으로 이주민을 지목하기 알맞은 환경이었다. 이 전에는 샌프란시스코의 중국인들이 한센병이나 성병의 전염원으로 낙인을 받았으나, 1918년 독감 유행 때에는 특히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유럽계 이민자들은 독감의 전염원으로 지목되었다. 이는 남부, 혹은 동유럽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게서 실제로 독감 발병률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현재로는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새로운 이민자들이 충분한 면역력을 가질 기회가 없었거나, 활동력이 왕성한 젊은 층이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사회적 보조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⁷⁾ 즉 이민자 집단의 사회적 지위는 이민자가 전염병에 취약하도록 만드는 매개요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을 비롯한 사회 여론은 감염병의 창궐이 인종적 특성으로 인한 것처럼 포장하였다. 예를 들어 1900년대 초 샌프란시스코의 흑사병 발생시, 흑사병은 중국인들만 감염된다는 유언비어가 퍼졌는데, 이 때문에 중국인들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 발생함과 더불어, 오히려 실제 흑사병의 원인인 쥐를 통한 방역에 소홀하게 되어 상황이 악화되기도 하였다.

2. 2010년대 한국의 가축 전염병

한국에서 감염병과 이주민을 연결하는 가장 비근한 예로, 가축전염병 초기 발병 원인이나 발병 경로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발병 근원을 가축사육 농장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지목한 사례가 있다.⁸⁾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의 동선은 매우 단순하고 사회적 교류가 적으며, 이후 조류독감의 경우 철새의 분변을 통한 확산이 많았다는 점이 밝혀지긴 했지만, 발병 초기에는 외국에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왔으며, 이것이 외국인 노동자 공동체를 통해 확산되었다는 담론이 퍼져나갔다. 또한 동물의 살처분 과정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기를 꺼리고, 군인들의 투입이 어렵게 되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살처분 과정에서 현장투입 인원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를 두고도 외국인 노동자를 감염원, 혹은 전염원으로 지목하는 여러 가지

7) Kraut, *op.cit.*, pp.125-129.

8) 주윤정/조하영/박효민. “가축전염병 살처분 노동과 위협의 외주화”, *담론201 제23권 제3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20, 28-30쪽.

추측성 이야기들이 많이 생성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낙인찍기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정부나 언론의 태도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가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확산하던 시기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살처분에 참여한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살처분 과정에 참여한 외국인 노동자를 격리조치하고 그 보상으로 임금 보장 등의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다.⁹⁾

3. 코로나19에 대한 낙인

코로나19와 이주민을 연결하는 담론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발생 초기 “우한 폐렴”으로 명명되었는데, 감염병에 지역명을 붙이지 않는 것을 권고하는 국제사회의 공유된 규범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동안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을 고수하려는 여론이 있었다. 또한 이후 국경 봉쇄에 대한 여론도 들끓었는데, 이때 주목할 것은 입국 금지의 대상에 대해 특정 지역을 통한 입국자가 아닌 특정 민족, 혹은 국적에 대해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한 예로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중국인 입국 금지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답변 하한선인 20만명을 훨씬 상회하는 76만 여명이 서명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청와대에서는 여러 차례 이 사안에 대한 답변을 반복하는 일이 있었다. 물론 이 청원글은 매우 짧은 내용으로 특별한 명시적 인종, 국적 차별의 내용은 없었으나, 그 제목에 있어서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많은 동의를 얻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감염병을 이주민과 연결지어 생각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¹⁰⁾

III. 팬데믹과 이주민의 취약성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코로나19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지만, 질병이 확산하고, 이 질병에 대응하여 방역을 실시하고, 치료하는 모든 과정 그리고,

9) 충청헤럴드, “충남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외노자’ 주의보”, 2019.10.02., <<http://www.ccherald.kr/news/articleView.html?idxno=13328>>, 검색일: 2021.6.28.

10) 청와대 청원 게시판,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2020.1.2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593>>, 검색일: 2021.6.28.

이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결과는 사회적 과정에 의해 매개되며, 사회적 집단에 따라 그 영향력을 달리한다. 이 사회적 집단은 성별 집단, 연령별 집단, 경제적 집단 등 여러 층위에 걸쳐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이주배경과 관련된 집단 별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를 위해 현재까지 나온 이주와 연관된 국제기구 등에서 논의된 주장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주제별로는 의료, 일자리, 교육, 그리고 사회적 편견으로 구분하였다.

1. 의료 및 보건의 상황

이주민은 선주민에 비해 감염병에 대해 여러 가지로 취약한 상황에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선주민에 비해 저소득층 비율이 높으며 이로 인해 건강, 주거, 작업환경이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 실제로 OECD 국가 내에서 평균 이민자의 30% 정도가 상대적 빈곤 층에 처해 있는데, 이는 선주민의 20% 정도가 상대적으로 빈곤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¹¹⁾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지만, 이민자들은 구조적으로 이러한 사회정책을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많은 국가에서 이주민은 저숙련 노동자를 중심으로 대인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는데, 이와 같은 환경 때문에 다른 직종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이 이주민들에게는 실제로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코로나19의 사망률의 차이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로는 캐나다의 경우 총 인구에서 이주민의 비율은 22%인데 반해 코로나19 사망자 중 이주민의 비율은 25%로 나타나 이주민은 선주민과 비교해 약 1.1배의 부담을 더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유럽 지역의 경우에는 이주민과 선주민 사이에 코로나19는 유병률이 대체로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사망자의 비율은 그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사망자 역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정확한 사인들이 분석된 것은 아니지만, 작년과 올해 스웨덴과 프랑스에서 사망자 중 이주민 비율 차이를 살펴보면, 두 나라 모두 2019년의 경우 사망자 중 이주민이 12~13% 수준을 유지하였으

11) OECD, *What is the Impact of Covid 19 Pandemic on Migrant and Their Children*, OECD, 2020, p.3.

12) Statistics Canada, "COVID-19 deaths among immigrants: Evidence from the early months of the pandemic", 2021.6.9, <<https://www150.statcan.gc.ca/n1/pub/45-28-0001/2021001/article/00017-eng.htm>>, 검색일: 2021.6.28.

나 2020년의 경우 사망자에서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에서 많게는 17%까지 상승하여 코로나19 시기에 사망자 수가 이주배경에 의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¹³⁾ 이와 같은 이주배경이 건강에 대해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 완화를 위해 유럽 각국은 여러 조치를 하고 있다. 벨기에, 칠레,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멕시코, 포르투갈, 스페인 및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는 신분 관계 없이 코로나19 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포르투갈의 경우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체류자격에 대한 문서 증명을 면제해주기도 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치료비 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하는 국가도 있다.

또한 비대면 상황에 의료정보 취득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한 비대면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들도 있는데, 독일, 캐나다 등은 이민청에서 비대면용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NGO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비대면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또한 덴마크, 노르웨이는 코로나19 관련 정보에 대한 다국어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체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이 노출된 현실은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2020년 봄 대구에서 대량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는데, 이 때문에 이주민들은 의료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었으며, 저소득층 이주노동자의 경우 외국인 주민 무료의료지원기관인 대구의료원에서 의료지원을 받았으나, 대구의료원이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이들은 그동안 받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다.¹⁴⁾

2. 일자리 상황

건강과 보건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주민에게 가장 광범위하고 직접적으로 타격을 미치는 분야는 일자리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 혹은 이주배경 한국인 노동자는 선주민에 비해 비정규 임시직, 저년차, 순환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언어적 문화적 이질성과 효율성 측면, 법의 보호에서 사각지대, 사회안전망의 부재 등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의 상황의 전반적인 악화는 이들을 가장 먼저 희생양으로 삼으며

13) OECD. *op.cit.*, pp.3-4.

14) 뉴스민, “[코로나19 대구 보고서] 이주노동자는 어떻게 살아남았나(합본)”, 2020.9.19., <<http://www.newsmmin.co.kr/news/51720/>>, 검색일: 2021.6.28.

상대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이주노동자들은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취약한 근로조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은 가사도우미나 음식업 등 직접적인 서비스 인력으로 종사하는 비율이 높는데,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첫다운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의 경우 중소 제조업체들도 많은 타격을 입었는데, 이들 역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직종이었다. 제조업체의 경우 업체가 완전히 폐쇄되지 않더라도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가장 취약하게 영향을 받는 대상은 이주노동자이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주민과 선주민의 고용률은 모두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폭이 대체로 이주민이 더 큰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주민은 자영업 비율이 선주민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캐나다,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및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자영업자 중 이민자의 비중이 40% 이상으로 나타나며, 많은 비율로, 음식,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다.¹⁵⁾

그 결과 이주노동자의 실업률은 선주민에 비해 크게 차이를 보인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전반적인 일자리가 감소했지만, 많은 국가에서 이주민과 선주민에게 차등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점이 연구 결과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지에서는 취업률 감소 폭이 두 배 이상에 이르고 있어 그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⁶⁾

코로나19로 인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일자리의 위협은 국내 체류 중인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 사이에서 이동금지 조치가 취해졌으며 이로 인해 국경이 폐쇄되었다. 이는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홍콩의 경우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가구가 많아 약 40만명 정도의 필리핀, 인도네시아 출신 가사도우미가 홍콩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¹⁷⁾ 그러나 홍콩과 필리핀간 국경이 폐쇄되면서 필리핀에서 홍콩으로 출국 대기중이던 15,000명과 필리핀에서 휴가를 보내던 10,000여명 등 총 25,000여명의 발이 묶인 사태가 발생하여 구직난과 인력난이 동시에 발생하기도 하였다.¹⁸⁾ 이들은 이미 홍콩에 일자리가 정해져있거나 출

15) OECD, *op.cit.*, p.10.

16) OECD, *... Ibid.*, p.11.

17) HongKong Immigration Department, "Statistics on the number of Foreign Domestic Helpers in Hong Kong", <<https://data.gov.hk/en-data/dataset/hk-imm-d-set4-statistics-fdh>>, 검색일: 2021.6.28.

18) The Jakarta Post, "The coronavirus outbreak and the plight of migrant workers", <<https://www.thejakartapost>.

국준비를 위한 모든 비용을 지불한 상태여서 피해가 컸다. 또한, 이와 같은 일자리의 폐쇄로 인해 합법적인 이주가 불가능해져서 보다 위험하고 불법적인 이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다른 하나의 문제로 떠올랐다.

한국의 경우도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한국에 체류 중이며 취업비자가 만료된 사람들이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더불어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통해 일하다 실직을 하였으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업체 중 이주노동자를 필요로 하지만 이들이 입국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예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21일 1차적으로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취업 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자격소지자가 국내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는 4년 10개월이 만료된 이주노동자가 60일 이상 다시 합법적으로 체류할 경우, 현재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5년을 넘게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영주자격 요건 등)의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을 고민한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이 가라앉지 않고 국가 간 이동이 계속해서 자유롭지 않게 되자 한국 정부는 같은 해 8월 24일, 이미 입국하여 있는 비전문 취업 이주노동자(E-9)에게 계절근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계절근로 신청 가능 대상자는 기존에 E-9 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간 근무 후 2020년 4월 14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사람들로, 법무부로부터 직권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이거나 출입국, 외국인관서로부터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사람들 중,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노동자가 그 대상이다.

이는 이주 노동자에게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였으나 실상 인도주의적인 측면과 더불어 한국의 산업현장 일손 부족을 해결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20년 한해 E-9 비자 입국자를 5만 6천명으로 예상하였으나,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국가별 도입현황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2020년 12월까지 전체 목표치의 약 12%에 불과한 6,688명 정도만이 입국하였으며, 이는 2019년 51,365명, 2018년 53,885명과 비교해 매우 적은 숫자여서 E-9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등에서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⁹⁾

com/academia/2020/02/21/the-coronavirus-outbreak-and-the-plight-of-migrant-workers.html>, 검색일: 2021.6.28.

이는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어서 유럽 각국 역시 국경을 두고 구직난과 인력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일들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류허가 연장과 일자리를 잃은 이민자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민행정이 지연되어 피해를 보는 이주민이 없도록 포르투갈에서는 공공기관의 섯다운을 최소화하고 단축근무를 유연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스페인, 그리스, 체코, 독일 등의 경우 실직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체류허가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과 강제송환이 지난 수년간 시행되고 있었으며, 지난 한 해에만 약 55,000명이 과테말라로 강제송환되었다. 문제는 이것이 코로나19 시기에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인데, 코로나19 확산의 비교적 초기였던 3월 말 코로나가 확진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비행기 편으로 강제 출국되는 조치가 취해져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²⁰⁾

3. 교육상황

성인 이주자들과 더불어 이주 1.5 혹은 2세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당면하는 문제 중 특히 교육문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한 사람의 일생을 가로질러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이주 2세가 처한 교육부분에서의 불리한 상황 역시 많은 글에서 지적된 바 있다. 물론 교육부분의 성과, 혹은 효과는 단기간에 측정될 수 없는 것으로 현재 코로나19가 이주 2세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를 단언하기는 쉽지 않으나, 이번 감염병 재난은 교육부분의 취약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많은 현장의 목소리들이 가정환경이나 여타 사회, 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교육격차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교육성과 측면에서도 중간층이 하위층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초중등 교육의 많은 부분이 비대면, 학생주도형 학습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과 가독성(internet literacy)과 같은 장비와 관련된 부분과 더불어, 학습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부모의 관여도 여부가 학습 성과를

19) 통계청,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국가별 도입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27_N001&conn_path=I2>, 검색일: 2021.6.23.

20) Voice of America, “Guatemalan Deportees from US Face Coronavirus Stigma, Threats and Violence”, <<https://www.voanews.com/americas/guatemalan-deportees-us-face-coronavirus-stigma-threats-and-violence>>, 검색일: 2021.6.28.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인터넷 접근성은 이주배경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가 선주민인 아동에 비해 이주배경 부모를 가지고 현재 정착국에서 태어난 아동, 그리고 외국에서 태어난 아동들의 인터넷 접근성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교육에서의 취약성은 학습진도 뿐만 아니라 이주민이 정착국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언어습득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즉 만 10세 내외의 이주한 지 5년 이내 아동들은 정착국의 언어를 가장 활발하게 습득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때 사회적 교류의 감소와 학습과정의 박탈은 이후 언어 발달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OECD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선주민 자녀에 비해 부모가 이주민인 청소년 혹은 자신이 이주민인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 접근성이 일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²¹⁾ 따라서 이들의 학업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IV. 팬데믹과 이주민 관련입법과 정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난이 사회의 각 집단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집단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더욱이 재난 상황이 끝날지라도 재난으로부터의 회복 기회 역시 불평등하게 주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재난에 대응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재난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이주민을 포함한 사회의 각 집단에게 균등하게 주어져 공정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1. 이주민 적용 감염병 재난입법 필요성

한국의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중심으로 한다. 헌법의 기본권 조항의 경우 대부분 “국민”을 기본권 주체로 명시하며, 법률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대응에 관하여 가장 자주 거론되는 법률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이 법의 목적을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물론 코로나19 대응이 모두 법률에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이루어

21) OECD, *op.cit.*, pp.16-17.

지는 것은 아니며 법률의 범위와 수권 내에서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법률의 체계가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이상 하위법령과 정부의 정책 또한 국민을 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재한화교 외에는 이주민 유입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한국에서 팬데믹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의 대책을 마련할 때 법과 정책은 아직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도 국가에 대하여 기본권 보장을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이주민을 포함한 감염병 관련 재난입법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각 기본권의 성질이 인간의 권리인지 국민의 권리인지를 따져, 전자에 대해서만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국가의 적극적 배려와 급부를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권은 자유권과 달리 대체로 후자에 속한다고 본다.²²⁾ 물론 사회권이냐 자유권이냐에 따라 사회권이라면 외국인에게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일도양단적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외국인에게도 사회권을 (일부 혹은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의도 있다.²³⁾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전제로 본다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을 위한 강제적 진단검사나 격리, 입원 등 조치는 신체의 자유 또는 자기결정권 등을 제한하는 조치로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또는 그 비용 부담) 등은 보통 국가의 적극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권 영역에 속하므로, 외국인인 이주민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사회권에 관해 첨언하자면, 이주민 중에는 국적을 취득하여 국민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으므로 사회권의 주체가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헌법 자체의 해석의 문제 외에도 실제 국가의 급부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입법과 정책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사회권 부분에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과 정책을 통하여 그에 상응하는 내용을 보장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의 형식적인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법률과 정책에 의하여 (국민 혹은 비국민인) 이주민을 포용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22)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결정; 헌법재판소 2000. 8. 31. 선고, 97헌가12 결정.

23) 최유, “외국인의 사회권 주체성에 관한 작은 연구”, 사회과학연구 19,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전광석, “다문화사회와 사회적 기본권 - 헌법적 접근을 위한 시론-”, 헌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10; 조재호,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과 재난지원금”, 사회보장법연구 제9권 제2호, 서울대학교 사회보장법 연구회, 2020 등의 논의를 참조할 것.

비로소 코로나19가 이주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 주는 시사점이 인간의 존엄이라는 헌법 정신 안에서 실천적 의미를 갖는다.

이에 더하여 실질적인 법률의 효과성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주민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민이 된 사람이라면 형식적으로는 국민 중심의 법과 정책에서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주민이라는 지위의 특성에 의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반적 경로에 관한 지식에 익숙하지 않거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애물은 조문상의 법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인 이주민을 법과 정책의 대상으로 포용하는 외에도 국민인 이주민이 현존하는 법·정책적 배려를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실질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헌법은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이 인간이라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고유한 가치를 가지며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 존중 받아야 함을 뜻한다. 그리고 헌법이 요청하는 평등은 원칙적으로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상대적 의미의 평등을 의미한다.²⁴⁾ 합리적인 차별대우는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겠으나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이주민을 방역 정책에서 차별하는 것은 방역의 효율성과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²⁵⁾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코로나19 대응 조치가 사회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 경우, 처음부터 외국인은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차별 취급의 헌법적 정당성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면 비상적 재난 상황에서 국가 공권력이 특정 인구집단을 배제하는 결과가 된다. 특별히 그 입국과 출국이 국가의 개입 하에 결정되는 고용허가제에 의한 이주노동자의 예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다.

다른 한편으로 이주민 관련 입법·정책 문제에는 국제인권규범 측면에서도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헌법 제6조에 따라 한국이 당사국인 국제조약은 국내에서도 효력을 갖는

24)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바57 결정; 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헌바49 결정.

25)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 영역에서도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국가에 의한 차별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 차별 취급의 헌법적 정당성은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판단한다(헌법재판소 2000. 8. 31. 선고, 97헌가12 결정). 예를 들어 후술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 진단 검사의 경우가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할 사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감염병이 국적과 직업을 가리지 않음에 비추어 이는 차별대우의 합리성 유무라는 완화된 척도에 따라 판단하여도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엄격한 척도인 차별취급의 비례성 유무에 따르면 더욱 그럴 것이다.

다. 한국은 노동의 권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어린이를 양육·교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A규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가입국이다. 물론 A규약 제2조는 각국의 자원이 허용하는 한에서 규약이 보장하는 권리의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동시에 같은 조에서 이러한 권리의 차별 없는 보장 의무도 부과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도 마찬가지이다. 이 협약은 질병 치료와 건강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사회보장제도 혜택에 대한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등을 보장하고 아동의 양육을 지원할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한다. 협약 제2조에 의하여 협약상 권리는 각 아동에게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제조약에 의한 권리는 이주민의 국적과 무관히 보장되어야 하며, 재분배와 포용의 가치를 기본으로 하여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제도에 기여할 수 없는 상황에 있거나 법제의 틀에서 배제된 사람까지 포괄해야 한다. 나아가 국제기구에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에서 체류자격과 무관히 이주민을 포괄할 것도 주문한다.²⁶⁾

2. 우리나라의 입법현황

2.1 의료분야 입법

한국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8월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부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외국인 감염병환자 등에 대해서도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제한 없이 국가가 지원하고 있어,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는 비판이 있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이 되었다.²⁷⁾ 새로운 조항은 외국

26) 김지혜, “‘모든 국민’이라는 허구적 보편성: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외국인 배제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비판”, 법과 정책연구 제21집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21, 183-187쪽.

인의 감염병 치료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가의 부담이 가능하다는 점을 열어 두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치료비 등의 지원 대상을 정함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고 있으며, 국가가 경비를 지원해야 하는 대상을 한국 내에서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에 한정한다는 조항이 있다. 물론 한국 정부의 경제적 측면과 한정된 의료자원의 측면을 고려한 결과이겠으나, 감염병의 방역체계 구축의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상호주의적 접근 방식은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등 자국의 의료체계가 잘 갖추어지지 않은 저개발 국가 출신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0년 12월 8일 이용호 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외국인인 ‘검역법’ 등을 위반하여 입국 후 감염병 치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의료 및 방역자원을 경증의 외국인에게까지 투입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시·도지사 등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검역법을 위반하여 입국 또는 상륙한 외국인 또는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의료 및 방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감염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치료 없이 강제로 퇴거시킨다는 인도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를 갖고 있음은 물론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도 효율적이지 않다.

미등록체류외국인에 대한 검사 및 치료와 관련한 법제의 개선도 필요하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누구나 위험에 감염될 가능성(일반성)을 가지므로 국적, 체류자격 등과 무관하다. 미등록체류외국인의 경우 강제퇴거의 우려로 인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의 의심이 든다고 해도 검사나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이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와 동법 시행령 제92조의2에 의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때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현재 법제상 코로나19의 진단이나 치료, 백신 접종 등 과정에서 미등록 체류 상태라는 사실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알려질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 법무부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1월에 이 사실을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에서 홍보 및 안내하도록 조치하였

27) 국회보건복지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648, 2020.8.3.) 제안취지 참조,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H0K0W7E3C0S1N1C0C8O2Q3T7I7S5>, 검색일: 2021.1.28.

음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²⁸⁾ 그러나 실제 미등록 상태의 외국인들이 이 점에 관하여 불안해 하거나 정부를 불신할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반대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기초한 강제적 조치 문제도 있다. 2021년 3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를 비롯해 각계의 비판이 있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국적에 차이가 있지 않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진 행정명령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하였다.²⁹⁾ 차별의 문제 외에도 코로나19 검사 강제는 외국인 노동자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치는 인권 보장의 견지에서 문제가 크다. 결국 이런 식의 행정명령은 철회되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언제든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존함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백신 접종을 경우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령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신청과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⁰⁾ 서울시에서도 외국인 중 건강보험가입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및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미등록외국인을 포함하여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백신 접종이 가능한데 보건소에서 신청·접종할 수 있다. 미등록외국인은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은 후에 접종을 받아야 한다. 단, 3개월 미만 단기체류자나 여행목적 방문자는 제외된다.³¹⁾ 미등록외국인도 백신접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 제84조와 동법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지 않을

28)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도 부담 없이 감염증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1.31., <<http://www.moj.go.kr/bbs/immigration/214/519175/artclView.do>>, 검색일: 2021.6.28.

29)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에게만 코로나19 진단검사 강요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 2021.3.22.,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6412>>, 검색일: 2021.6.28.

30) 예를 들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75세 이상 외국인 예방접종 관련 안내”, 2021.4.19.,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473/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IMkY0NyUyRjU0NjcXNyUyRmFydGNsVmllcy5kbyUzRg%3D%3D>>, 검색일: 2021.6.18.

31) 서울특별시, “백신접종 사전예약할 때, 가장 궁금한 10가지!”, 2021.5.21.,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1685>>, 검색일: 2021.6.18.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외국인들이 실제 이러한 제도에 관하여 인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2.2 외국인 노동자관련 법제

취업의 측면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외국인의 출입국이 제한된 현 상황에서는 비자가 만료되어 더이상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난과 새로이 외국인 노동자를 맞이하여 고용을 해야 하는 고용주의 구인난이 한꺼번에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의 비교적 초기였던 2020년 5월 현재 외국인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1만 5천명이 감소하였으며, 외국인 실업자는 전년 대비 38.2%가 증가한 7만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방문취업자는 전년대비 20%(4만명)가 감소하였으며, 비전문 취업도 9천명이 감소하였다.³²⁾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임시방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체류자격을 제한적으로 늘려주거나, 단순기술직의 비자를 계절노동자 비자로 전환해 주는 한시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쉽게 종식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는 만큼 일회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단기적 조치보다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외국인 노동자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이며 출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체류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들 가운데 영주체류자격이나 국적취득 신청요건 가운데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이나, 국적취득(일반귀화) 신청을 허용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영주화 사안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본질적으로는 그 궤를 달리하지만 팬데믹에 따른 급격한 노동환경의 변화,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사회에 대한 영향의 증대 등을 계기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법제적 과제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입법은 이미 몇 가지 이루어진 바가 있다. 2020년 고용허가제(E-9)에 의한 이주노동자들의 취업활동기간을 50일 연장하는 조치가 있었음은 언급한 바와 같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최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다소간 변화가 있다. 본래 제1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는 2년 미만의 범위에서만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처음의 취업활동 기간 3년을 합하

32) 통계청,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국가별 도입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27_N001>, 검색일: 2021.6.23.

여 총 5년 미만의 기간 동안만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여기에 2021년 4월 13일 제2항을 신설하여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례를 두어 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개정이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이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2021년 4월 개정되어 10월 24일부터 시행될 제18조의4 제1항은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 만료 전 사용자가 고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일정 범위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재입국 취업제한기간을 종전의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체류 자격의 문제가 해결된 이주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실직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에 취약하다. 이주노동자의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고용허가제에 의한 이주노동자와 방문취업제에 의한 동포노동자 모두 극히 일부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들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한다.³³⁾

2.3 교육관련 법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격차에 관한 이야기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³⁴⁾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지만, 이는 비단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만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이주배경 학생들의 교육격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교육 부분에서의 격차는 이주 2세 본인의 성장과 발달, 나아가 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교육 영역에서의 기본권 실현은 주로 국가의 적극적 급부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주민 자녀들의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입법부와 중앙행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이주민 여부를 불문하고 교육 영역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온라인 개학을 둘러싼 인터넷 접근성 문제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 등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2020년 6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을

33) 이태정, “코로나19 위기의 장기화와 이주노동”, 산업노동연구 제26권 제3호, 한국산업노동학회, 2020, 50쪽.

34) 사회적 현상이 교육효과로 나타나는데는 시차가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으나 이에 대해서는 강호수/남신동,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 속, 학습격차의 확대 재생산: 경기도 학생·학부모 대상의 조사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비평 제46호, 교육비평, 2020 참조.

심의하여 원격수업을 위한 다문화학생용 교과보조교재와 전자책을 보급하고, 한국어교육 원격수업 콘텐츠를 개발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학부모들의 자녀 학습지도가 수월하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결혼이민자 김정고시반 등 “다문화 부모학교”를 운영하며, 학교의 공지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을 확대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에서는 2020년 9월, 돌봄 부담을 보완하기 위하여 미취학 연령부터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과 함께 중학교 휴업 및 원격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중학생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는 ‘비대면학습지원’ 사업을 발표하였다. 이들 사업은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물론 학교 밖 아동까지도 포괄하지만 난민으로 인정 받은 아동 외에는 대한민국 국적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외국인인 이주아동들은 이들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³⁵⁾ 다만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외국 국적 아동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였다.³⁶⁾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각종·특수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의 외국 국적 아동,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외국 국적 학교 밖 아동 등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학교 밖 아동은 보호자의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과 아동의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므로 미등록 이주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인다.³⁷⁾

이주아동에 대한 추가적 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온라인 지원을 강조하였다. 여기에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을 위한 온라인 한국어 교육 콘텐츠 제작, 기초학력 개선을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 통·번역 지원을 통한 온라인 개학 지원, 기존의 대학생 멘토링 사업 수행에서 온라인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³⁸⁾ 여기서 교육부의 정책 대상인 “다문화학생”이라는 개념은 국제결혼 자녀(국제결혼에 의한 국내 출생 자녀와 중도 입국 자녀), 그리고 외국인 사이에 태어난 외국인 가정 자녀를 포괄한다.³⁹⁾ 외국인 가정 자녀가 포함되지 않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체계보다는 다소 그 지원 범위

35) 보건복지부/교육부/여성가족부,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2020.9.24.,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2058&d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검색일: 2021.6.28.

36) 김지혜, 앞의 글, 190쪽.

37) 서울시교육청, “외국국적 학생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안내”, 2020.10.13.,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72&bbsBean.bbsSeq=6062>>, 검색일: 2021.6.21.

38) 교육부, “(출발선 평등을 위한)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교육부 교육기획보장과, 2021.2.2쪽, 6쪽, 20-21쪽.

39) 교육부, 위의 웹사이트, 25쪽.

가 넓다. 현재 제도상 미등록 이주아동이라 하더라도 공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교육 영역에 진입한 경우라면 미등록 이주아동도 교육부의 정책 대상이 된다. 다만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원 사례도 있다. 경기도 화성시는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아동 중 방임에 취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대상 아동들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에 적응이 어렵고 학교에 가지 않는 때에는 돌봄에 공백이 커질 위험이 있어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⁴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확대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직접 한국어나 수학 등 과목의 학습 지원이 가능한 AI 스피커 설치를 지원하는 경기도 광주시의 사례도 있다.⁴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지역 내의 이주민 자녀들의 돌봄 공백이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경우 지방정부의 상황에 따라 정책은 달라지므로, 재정적 여건 등으로 인해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없는 곳의 이주민 자녀들은 지원을 받기 어려우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대상 주민의 범위가 다를 수 있는 점도 문제이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다문화가족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 해당 지역 외국인 주민 자녀까지 포함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각 지역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지원의 내용과 대상을 정한다면 지역 별 차이는 말 그대로 차이에 불과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지역 별 차이는 곧 지역 간 격차가 될 우려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어느 경우든 제도 밖에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 역시 교육과 보육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학교수업이 재개되는 시점에서 중도입국청소년 등 이주배경 청소년을 비롯한 광범위한 취약계층에 대해 학습격차를 보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학업 외적으로도 학생들 간에 문화적 재통합을 이루고 사회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통계에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이른바 미등록 이주아동의 실태 파악과 이를 기초로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건강지원은 물론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제적 개선이 필요하다.

40) 여성가족부,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I,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2021, 1199-1200쪽.

41) 여성가족부, 위의 책, 1240쪽.

V. 결론

이 논문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주민이 처해 있는 열악한 상황을 의료보건, 고용, 교육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입법적 대응을 검토하여 보다 적극적인 입법대응을 촉구하였다. 이와 같은 입법대응은 재난이 사회계층에 따라 불균등하게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고, 나아가 그 회복 과정에서도 사회적 약자 집단들에게 보다 공정한 회복기회를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이주민들의 팬데믹으로부터의 공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앞에서 본 의료와 노동, 교육 등 분야에서 사회 구성원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외국인 등 이주민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권 영역에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국민의 사회권 보장 영역에서도 국가에 넓은 재량을 인정하는 이론 구성을 해 온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국가 정책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국민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에도 국가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외국인에게까지 이를 확대하기는 어렵다거나, 또는 한국어 구사가 쉽지 않은 이주민인 국민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은 인력과 비용 측면에서 쉽지 않다는 점이 이주민을 배제하는 정책을 헌법상 용인 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생명, 건강,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이라는 영역까지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외국인과 국민의 이분법, 평등과 사회권 분야에서 인정되는 국가의 재량이라는 논리에 의해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헌법의 대전제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의 정신과 배치된다. 교육 분야에서의 소외가 당장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겠지만, 장기적으로 한 인격체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교육 분야 또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주민 지원 관련 입법이 보다 활발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앞부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의료 및 보건 부분에서 이주민이 국민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 자체로 이주민 본인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뿐 아니라 감염병의 특성상 지역 사회 차원의 악영향이 나타나게 된다. 일자리 분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고용허가제나 계절 근로 등 제도를 통하여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특히 국가의 개입에 의하여 입국과 체류가 결정된다.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거나 국내 체류 기간 내에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실직하는

경우를 보면, 국가의 인력수급 필요성에 의하여 입국했으면서도 체류 상황이 불안정해 지거나 생계에 필요한 중요한 전제인 취업이 곤란해지는 사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비교적 비가시적 형태로 나타나는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학교 현장에서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당장 인터넷 접근성에 의한 교육 기회에서의 차별이 나타나며, 취학 연령대의 이주민이나 2세의 경우 사회적 교류가 감소하고 언어 습득의 기회도 함께 감소할 수 있음은 이미 본 것과 같다.

더 나아가 코로나19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현재의 문제와 우려를 바탕으로 조금 더 이후를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로부터 회복되는 기간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회복된 이후에 이주민과 이주민 공동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또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사회적 약자 계층과 마찬가지로 이주민은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와 대응은 물론 회복력(resilience)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입법 차원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의료체계의 대응, 직업이나 교육의 측면에서 코로나19 이후 일자리의 회복 기간에도 이주노동자에게 할당되는 일자리는 가장 마지막에 분배될 가능성이 크며, 교육에서의 성과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 역시 이주민 2세를 위한 자원 분배는 우선순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의료체계에서의 이주민 특히 미등록이주민들이 놓여 있는 사각지대는 심각하다.

결론적으로 어느 순간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이 종식되더라도, 이 영향력은 사회적 약자 계층인 이주민들에게 계속해서 남아 있을 것이며, 이들이 경험해왔던 불이익, 사회적 약자로서의 불공정 정도는 코로나19 이후에 더 확대,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예상된다.

아직 코로나19 이후의 우리의 삶과 이주민의 삶에 대해 선부른 예측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사회정책적, 입법적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주민의 사회적 삶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안정과 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바이러스는 사라져도 코로나19 재난의 여파는 우리사회 내에 오래 지속될 것이다. 이미 전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이주민의 재난에 대한 취약성(vulnerability)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도 중요하지만 재난 이후 이들이 입은 피해로부터 공정한 회복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입법을 염두해야 할 시점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 모니터링 결과 보고, 국가인권위원회, 2020.
- 여성가족부,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I,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2021.
- Eric Klinenberg, 홍경탁 옮김, 폭염사회: 폭염은 사회를 어떻게 바꿨나, 글항아리, 2018.
- OECD, *What is the Impact of Covid 19 Pandemic on Migrant and Their Children*, OECD, 2020.

2. 학술지

- 강호수/남신동,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 속, 학습격차의 확대 재생산: 경기도 학생·학부모 대상의 조사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비평 제46호, 교육비평, 2020, 180-193쪽.
- 김서형, “19세기의 유행성 콜레라와 미국사회 개혁운동”, 의사학 제24권 제3호, 대한의사학회, 2015, 783-814쪽.
- 김지혜, “‘모든 국민’이라는 허구적 보편성: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외국인 배제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비판”, 법과정책연구 제21집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21, 177-200쪽.
- 양기근, “재난 취약성 극복과 복원력 향상 방안- 재난 취약성과 복원력의 개념적 통합을 중심으로”, *Crisisonomy* Vol.12, No.9,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6, 143-155쪽.
- 이태정, “코로나19 위기의 장기화와 이주노동”, 산업노동연구 제26권 제3호, 한국산업노동학회, 2020, 35-62쪽.
- 전광석, “다문화사회와 사회적 기본권 -헌법적 접근을 위한 시론-”, 헌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10, 105-146쪽.
- 조재호,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과 재난지원금”, 사회보장법연구 제9권 제2호, 서울대학교 사회보장법연구회, 2020, 177-200쪽.
- 주윤정/조하영/박효민, “가축전염병 살처분 노동과 위험의 외주화”, *담론201* 제23권 제3

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20, 7-38쪽.

최유, “외국인의 사회권 주체성에 관한 작은 연구”, 사회과학연구 19,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115-138쪽.

Alan M. Kraut, “Immigration, Ethnicity, and the Pandemic”, *Public Health Reports Vol.125 Issue 3*, SAGE, 2010, pp.123-133.

Dennis Zhang, “Sinophobic Epidemics in America: Historical Discontinuity in Disease-related Yellow Peril Imaginaries of the Past and Present”. *Journal of Medical Humanities* 42, Springer, 2021, pp.63-80.

3. 웹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에게만 코로나19 진단검사 강요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 2021.3.22.,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6412>>, 검색일: 2021.6.28.

국회보건복지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648, 2020. 8. 3.),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H0K0W7E3C0S1N1C0C8O2Q3T7I7S5>, 검색일: 2021.1.28.

뉴스민, “[코로나19 대구 보고서] 이주노동자는 어떻게 살아남았나(합본)”, 2020.9.19., <<http://www.newsmin.co.kr/news/51720/>>, 최종검색일: 2021.6.28.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도 부담 없이 감염증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1.31., <<http://www.moj.go.kr/bbs/immigration/214/519175/artclView.do>>, 검색일: 2021.6.2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75세 이상 외국인 예방접종 관련 안내”, 2021.4.19.,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473/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0NyUyRjU0NjcXNyUyRmFydGNsVmlldy5kbyUzRg%3D%3D>>, 검색일: 2021.6.18.

서울특별시, “백신접종 사전예약할 때, 가장 궁금한 10가지!”, 2021.5.21.,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1685>>, 검색일: 2021.6.18.

서울시교육청, “외국국적 학생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안내”, 2020.10.13.,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72&bbsBean.bbsSeq=6062>>.

검색일: 2021.6.21.

청와대 청원 게시판,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2020.1.2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593>>, 검색일: 2021.6.28.

충청헤럴드, “충남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외노자’ 주의보”, 2019.10.02. <<http://www.ccherald.kr/news/articleView.html?idxno=13328>>, 검색일: 2021.6.28.

통계청,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국가별 도입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27_N001&conn_path=I2>, 검색일: 2021.6.23.

HongKong Immigration Department, “Statistics on the number of Foreign Domestic Helpers in Hong Kong”, <<https://data.gov.hk/en-data/dataset/hk-immmd-set4-statistics-fdh>>, 검색일: 2021.6.28.

Statistics Canada, “COVID-19 deaths among immigrants: Evidence from the early months of the pandemic”, 2021.6.9., <<https://www150.statcan.gc.ca/n1/pub/45-28-0001/2021001/article/00017-eng.htm>>, 검색일: 2021.6.28.

The Jakarta Post, “The coronavirus outbreak and the plight of migrant workers”, <<https://www.thejakartapost.com/academia/2020/02/21/the-coronavirus-outbreak-and-the-plight-of-migrant-workers.html>>, 검색일: 2021.6.28.

Voice of America, “Guatemalan Deportees from US Face Coronavirus Stigma, Threats and Violence”, <<https://www.voanews.com/americas/guatemalan-deportees-us-face-coronavirus-stigma-threats-and-violence>>, 검색일: 2021.6.28.

[Abstract]

Legislation for Immigrant Society under the COVID-19 Situation

Park, Hyomin^{*}

Kim, Hounjoung^{**}

Choi, Yooncheol^{***}

While the world is suffering from the unprecedented COVID-19 disaster, migrants, who are socially disadvantaged in many societies, face with more risks and difficulties. In particular, various empirical data show that migrants are very difficult in the aspects of medical care, occupation, and education, which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quality of human life.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impact of unequal disasters on migrants not only in Korean society but also internationally, and examines several indicators that show the phenomena. In many countries, migrants have been exposed to relatively high levels of COVID-19 infection, showing vulnerability in term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employment. In addition, in many countries, it appears that children of migrants are experiencing un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in the non-face-to-face education process as their Internet access is relatively low. On the other hand, Korea's legislative system is centered only on the people who has nationality, so consideration for migrants in disaster situations is relatively insufficient. After COVID-19, there have been some policy responses in the face of trial and error and specific problems, but there are still blind spots in the policy. In this paper, we discussed legislation and policies related to foreigners for just recovery in light of the situation of foreigners in the current COVID-19 disaster situation.

[Key Words] COVID-19, Immigrants' Society, Immigrant, Just Recovery, Pandemic

^{*} Lead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Sociology, University of Seoul

^{**} Co-Author: Ph.D. in Law, Research Fellow, Migration and Social-Integration Research Center, Konkuk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School of Law, Konkuk University